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장

제48호 2023. 10. 18(수)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920호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1
- 남원시 조례 제1921호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조례-----10
- 남원시 조례 제1922호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17
- 남원시 조례 제1923호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1
- 남원시 조례 제1924호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
- 남원시 조례 제1925호 남원시 혼불문학상 지원 조례안-----33
- 남원시 조례 제1926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5
- 남원시 조례 제1927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8
- 남원시 조례 제1928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5
- 남원시 조례 제1929호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49
- 남원시 조례 제1930호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3
- 남원시 조례 제1931호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56
- 남원시 조례 제1932호 남원시 이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59
- 남원시 조례 제1933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역사회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7
- 남원시 조례 제1934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70
- 남원시 조례 제1935호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81
- 남원시 조례 제1936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6
- 남원시 조례 제1937호 남원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9
- 남원시 조례 제1938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4
- 남원시 조례 제1939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9
- 남원시 조례 제1940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4
- 남원시 조례 제1941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7
- 남원시 조례 제1942호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120
- 남원시 조례 제1943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8

- 남원시 조례 제1944호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4
- 남원시 조례 제1945호 남원시 상수도 원인지부담금 징수 조례안-----149
- 남원시 조례 제1946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8
- 남원시 조례 제1947호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2
- 남원시 조례 제1948호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7
- 남원시 조례 제1949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3
- 남원시 조례 제1950호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88
- 남원시 조례 제1951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3
- 남원시 조례 제1952호 남원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206
- 남원시 조례 제1953호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0
- 남원시 조례 제1954호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2
- 남원시 조례 제1955호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216
- 남원시 조례 제1956호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1
- 남원시 조례 제1957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226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53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229
- 남원시 훈령 제454호 남원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236

예 규

- 남원시 예규 제38호 담당 명칭 변경을 위한 남원시 지침 일괄개정지침안-----23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필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규정 신설(안 제20조, 안 제21조)
- 나.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제23조)
- 다. 어문규정에 따른 장(章)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0 호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를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20조의 제목 “(조사·연구 의뢰)”를 “(협의체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교육·홍보
2.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지표 개발, 시민의견 수렴
3. 지속가능성 모니터링·평가·보고서 작성
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협의체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협의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등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교육·홍보 등)”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 3. 그 밖에 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협의체의 운영경비
- 2.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4조)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신 설>	제3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위원회</u> 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주관 <u>담당</u> 이 된다.	제18조(간사) ----- ----- ----- <u>팀장</u> -----.
<신 설>	제4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20조(조사·연구 의뢰) ① <u>시장</u> 은 <u>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u> 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u>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1. <u>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교육·홍보</u> 2. <u>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지</u>

현 행	개 정 안
<p><u>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21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u></p>	<p><u>표 개발, 시민의견 수렴</u></p> <p><u>3. 지속가능성 모니터링·평가·보고서 작성</u></p> <p><u>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u></p> <p><u>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p> <p><u>② 협의체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p> <p><u>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u></p> <p><u>2. 협의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등</u></p> <p><u>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21조(사무국)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u>야 한다.</u></p> <p><u><신 설></u></p>	<p><u>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u> <u>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u> <u>3. 그 밖에 협의체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u>
<p><u><신 설></u></p>	<p><u>제2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협의체의 운영경비</u> <u>2.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u> <u>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u> <p><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u></p>
<p><u><신 설></u></p>	<p><u>제2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u></p>

시 보

현 행	개 정 안
<p><u>제22조 · 제23조</u> (생 략)</p> <p><u>제24조</u>(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의</u> 의결을 거쳐 <u>위원장이</u> 정한다.</p>	<p><u>를 위탁할 수 있다.</u></p> <p><u>제24조 · 제25조</u>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p> <p><u>제26조</u>(시행규칙) ----- ----- ----- <u>규칙으로</u> --- -----.</p>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심 사 필	2023년 8월 23일 법무규제개혁담당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제정이유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사업 및 예산 지원, 협력사업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 다. 대학협력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6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24. ~ 2023. 8. 1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 2) 비용추계서: 붙임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1 호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 사업
-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학 등이 교육시설을 시 지역 내로 설치·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1. 지역 사회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2. 정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 관련 학술 토론회
- 3. 지역 정책이해 지역 주민 교육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책연구사업 및 주민교육사업

제6조(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대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및 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시·대학 협력 사업 지원
- 대학의 교육·연구용 시설·설비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관련조문

- 사업 및 지원(제4조)
- 연구시설의 지원(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대학 및 연구시설 등을 관내 이전 및 신설하여 협력사업 추진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등)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300,000천원 (2024년도 예산)
 - 운영비 : 50,000천원
 - 연구비 : 100,000천원
 - 교육비 : 50,000천원
 - 시설비 : 100,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9,300,000	0	3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운영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연구비	700,000	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교육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시설비	7,900,000	0	1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비 편성, 도비 및 대학 예산 확보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기획실장 안순엽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2 호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제 10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남원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시비, 도비,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광고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다.)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3 호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읍·면·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남원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

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방법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법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법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4. “자율방법활동”(이하 “방법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나.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다.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

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5. “남원시 자율방법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남원시 읍·면·동 방법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법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 활동 등에 필요한 방법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방법대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초소 설치 및 시설개선(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법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법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법활동 등을 위한 방법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방법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법대(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법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도경찰청장이나 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도경찰청장 또는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대 및 방법대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1.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비롯한 방법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 및 방법대원
 -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법대 및 방법대원
 -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법대 및 방법대원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법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2023. (0/0분기)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 · 연합대)

(단위: 원)

1. 사업명 :

2.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초
계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2023.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2023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23.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명 : ◦ 일 자 : 2023.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p>※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p>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법대장

○○자율방범대 · 연합대 방법일지

20 . . . ()요일					
순찰자	직 책	이 름	직 책	이 름	
	조 장		대 원		
	대 원		대 원		
	대 원		대 원		
	대 원		대 원		
순찰시간					
순찰내용 (도보순찰)	1.				
	2.				
순찰차량 운행일지 (도보순찰시 운행기록 미기재)	출 발 :	운 전 자	전일주행(km) (A)	금일주행(km) (B)	최종주행(km) (A)+(B)
	귀 소 :				
순찰사항					
순찰자 전달사항 및 특이사항					
확 인	작성자	성명 : (인)			

2023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 00.00.00.(0요일) 00:00~00:00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4 호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회의의 공표)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남원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1조(회의의 공표)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남원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5 호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역량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혼불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의 취지를 높이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① 시장은 문학상 운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심사 및 시상 등 문학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모) 시장은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5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장편소설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창작품이어야 한다.

제6조(시상 등) ① 문학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 부문으로 다시 시상하지 않는다.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6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다자녀 가정”이란 19세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1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 10.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 11.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8. ~ 10.</u>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다자녀 가정”이란 19세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u></p> <p>9. <u>“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u></p> <p><u>10. ~ 12.</u> (생략)</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u></p> <p>11. <u>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u></p> <p>② ----- -----</p>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
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
의 50을 감경한다.

- 1. ~ 4. (생략)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6. ~ 8. (생략)

④ (생략)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의-----

-----.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2조제1항 -----

6.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7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및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및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호국보훈수당지원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가”를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으로,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65세 이상인 사람</u>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u>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u>)</p> <p>2. (생략)</p> <p>3. ~ 5. 삭제</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 ----- <u>사람</u> ----- -----.</p> <p>1. ----- ----- ----- ----- -- (<u>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u>)</p> <p>2. (현행과 같음)</p> <p>6.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p> <p>7.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p> <p>8.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p>

현 행	개 정 안
<p>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u>국가유공자가</u>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u>15만원</u>을 지급한다. <u>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u></p> <p>⑤ (생략)</p> <p>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 편의를 위해 <u>국가보훈처</u>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 지급사실을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u>조례</u> 제7조제5호에 따른 호국보훈수당지원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p> <p>④ ----- <u>국가보훈 대상자 본인</u>이 ----- ----- <u>30만원</u>----- . , ----- -----<단서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 ----- ----- <u>국가보훈부</u>----- ----- ----- ----- ----- ----- ----- -----</p>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사망위로금 지원액 인상
- 관련조문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제3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 명/천원)

구 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보훈수당	대상인원	-	1,400	1,370	1,340	1,310	1,280	월평균
	예산액	8,040,000	1,680,000	1,644,000	1,608,000	1,572,000	1,536,000	연간
사망위로금	대상인원	880	120	160	180	200	220	연간
	예산액	264,000	36,000	48,000	54,000	60,000	66,000	연간

※ 고령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자연 감소분 반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1인) 보훈수당 : 도비보조금 2만원, 자체세입 8만원
 - (1인) 사망위로금 : 자체세입 30만원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336,000	328,800	321,600	314,400	307,200	1,608,000	
시 비	1,380,000	1,363,200	1,340,400	1,317,600	1,294,800	6,696,000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보훈수당	1,680,000	1,644,000	1,608,000	1,572,000	1,536,000	8,040,000	
사망위로금	36,000	48,000	54,000	60,000	66,000	264,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336,000	328,800	321,600	314,400	307,200	1,608,000
	시비	1,380,000	1,363,200	1,340,400	1,317,600	1,294,800	6,696,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8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을 “법 제2조제2호의”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자활기업당 7천만원, 자활사업단에 4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원 범위, 자활사업단의 경우 4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 ----- ----- -----.</p>
<p>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5조(지원대상) ----- ----- ----- ----- ----- -----.</p>
<p>1. 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p>	<p>1. 법 제2조제2호의 ----- ----- 법 제2조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p>
<p>2. ~ 6. (생략)</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자활사업단에 4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p>	<p>제8조의2(자금의 대여) ① ----- ----- ----- 1억원 ----- ----- -----</p>

현행	개정안
<p>다.</p> <p>② ~ ④ (생략)</p> <p>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u>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원 범위, 자활사업단의 경우 4천만원 범위</u>에서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p> <p>-----</p> <p>-----</p> <p>----- <u>1억원</u>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③ (생략)</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관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팀</u></p> <p><u>장</u>-----.</p>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29 호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내고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결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 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위기가구를 말하며 위기개입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다.
2. “위기가구”란 생계·주거·의료·돌봄의 문제로 자·타의 위험성이 있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가정을 말한다.
3. “통합사례관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말하며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적인 관

계를 맺으면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복지사각지대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인적 안전망 확대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지원 대상자 선별에 관한 사항
4. 통합서비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위기 지원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제조사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여름철·겨울철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 발생 여부
2. 주민등록 일제 조사 시 거주 불명 등 실거주 확인으로 인한 위기 여부
3. 복지사각지대 사건과 관련한 전국 공통이슈 발생 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정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에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담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필수 생활에 필요한 전기·수도·가스 등 체납자의 위기 여부
2.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자의 위기 여부
3. 기타 불특정한 사유로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④ 시장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2. 민·관 협력 행사 및 교육활동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안전과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위기 요인에 따른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 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사례관리 부서의 협력
 2. 민간부문 사례관리 협력
 3.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조정
- ② 시장은 사회복지 공공조직, 관련기관, 공익단체 등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제보하는 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0 호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4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p>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1 호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2 호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 영향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 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차별 없는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아동 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놀이·문화·복지·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 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아동복지법」 및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이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아동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동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3.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연수
5.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6.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안전·건강 등 아동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7.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8. 그 밖의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동 및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배분 등을 분석하여 아동 권리 증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13조(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 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대표
3.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아동 친화도시 업무 과장
5.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8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아동 영향평가

제19조(아동 영향평가 등) 시장은 아동 관련 정부 정책과 조례를 비롯한 시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행 전후에 걸쳐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시장은 아동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 권리증진 사업

제20조(아동 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아동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실태 등을 매년 조사·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를 아동 권리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 권리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일반 시민, 정치인,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 의견 존중과 아동 권리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3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조항을 삭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 대상) ① (생략)</p> <p>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u>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u></p>	<p>제4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에 사업장을 두고,</u> ----- ----- -----<u>.<단서 규정 삭제></u>-----</p>
<p>제5조(제외대상)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2. (생략)</p> <p>3. <u>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경우</u></p> <p>③ (생략)</p>	<p>제5조(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4 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 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화장품, 식품, 의약품, 화학, 농생명 등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 “바이오집적화단지”란 바이오산업 관련 제조생산, 연구개발, 교육, 지원, 서비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합기능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

제2장 바이오산업의 진흥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바이오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 유치
2.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상용화 등
4.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지원
6. 바이오산업 정보교류 및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7. 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홍보
8. 바이오산업 관련 학술진흥 및 협업사업화를 위한 출판·통신판매 관련 사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이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예

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연구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

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 ① 바이오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바이오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제18조(위치) 연구원의 위치는 남원시 시묘길 43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금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3.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성과계약)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원장과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구원장의 연임결정, 차기연도 연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의 평가는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한다.

③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사업) 연구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남원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 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경영인력 양성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 창업보육 및 바이오관련업체 유치·육성 지원
7. 연구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10. 시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
12. 시장 개척 및 브랜드 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홍보 지원
13. 학술 기능 및 협업 사업화를 위한 출판·통신 판매 관련 사업 지원
14.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3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2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연구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보고 및 감사) 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의 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회계·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제29조(경영실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원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 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5 호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화재”란 시에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4. “화재폐기물”이란 제4호의 화재에 따른 연소재 및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빠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그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공장인 경우
4.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판명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제2호 및 화재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비용 환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대표)	회사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령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화재 현황	화재일시		
	위 치		
	피해내용	화재경위	
피해정도			
화재폐기물 처리내용	처리일시		
	처리업체		
	처리비용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사진 1부. 3. 화재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신청·접수 기업지원과	→	조사·확인 기업지원과	→	결과통지 기업지원과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상(제7조 관련)

연번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지급액	비고 (연락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6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같은 조 제23호 중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을 “이상이 고, 상시고용인원 100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상시고용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100분의 10의”를 “100분의 15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투자금액”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인원”을 “고용인원수에 따라”로, “가산하여”를 “10퍼센트 이내에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수송산업
2. 바이오산업
3. 에너지신산업
4. 스마트농생명
5. 정보통신융합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지원 업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관외에 소재하는”을 “관외”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을 “이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전 및 신설”을 “이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은 제외한다.

제16조 중 “100분의 10의”를 “100분의 15의”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가 시로 되어 있을 경우)”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시 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을 “공장등록(등록변경)이 완료된”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인 경우: 100억원 이내
2. 1,5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인 경우: 150억원 이내
3. 2,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인 경우: 200억원 이내
4. 3,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인 경우: 300억원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물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투자사업장 이외의 관내 지역에 건물 신축 및 매입
2. 세대수는 25세대 이상(다만, 같은 사업자가 2개 이상 건물을 신축 및 매입한 경우 합산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자문가(이하 “자문가”라 한

다)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기업, 공공기관(산업단지공단 등), 금융기업 등에서 근무하여 투자자문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민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기업 투자 및 공장설립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투자기업 자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투자기업은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중 “제13조”를 “제13조 및 제2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내·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p> <p>2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22. (현행과 같음)</p> <p>23. ----- ----- ----- 이상 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 -----.</p> <p>24.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1.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p> <p>2.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p> <p>3.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p> <p>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p> <p>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p>

현행	개정안
<p>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p> <p>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u>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u>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u></p>	<p><u>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③ <u>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p>④ <u>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p> <p>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p> <p>① ----- ----- ----- ----- ----- <u>신규 상</u> <u>시고용인원</u>----- ----- ----- <u>100분의 15의</u> ----- ----- ----- ----- ----- ----- <u>보조금</u> -----</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u>고용인원</u> 지원 비율을 <u>가산하여</u>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 략) <u><신 설></u></p>	<p>----- -. ② ----- ----- <u>고용인원수에 따라</u> ----- - <u>10퍼센트 이내에서</u>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u></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3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미래수송산업</u> 2. <u>바이오산업</u> 3. <u>에너지신산업</u> 4. <u>스마트농생명</u> 5. <u>정보통신융합</u> <p>② <u>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지원 업종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u></p> <p>① 시장은 <u>관외에 소재하는</u> 기업이 본사를 시에 <u>이전하거나 신설하는</u>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u>이전보조금</u>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p>	<p><u>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u></p> <p>① ----- <u>관외</u> ----- ----- <u>이전하는</u> ----- ----- ----- ----- -----.</p>

현 행	개 정 안
<p>1. (생 략)</p> <p>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u>경우</u></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경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가 시로 되어 있을 경우)</u></p>
<p>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생 략)</p> <p>② 물류비 지원은 투자유치 기업이 <u>시 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u> 지원하며,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u>최고 3억원</u>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공장등록(등록변경)이 완료된</u> ----- ----- ----- ----- 5 <u>억원</u> -----.</p>
<p>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p> <p>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u>100분의 10범위</u>에서 투자건당 <u>최고 100억원</u>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p>	<p>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p> <p>① ----- ----- ----- ----- ----- ----- ----- ----<u>100분의 25의 범위</u>에서 투자건당 다음 각 호에 따라 ---- ----- -----</p>

현 행	개 정 안
<p>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 금액을 합산한다.</p>	<p>----- ----- ----- --.</p>
<p><u><신 설></u></p>	<p>1. <u>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인 경우: 100억원 이내</u></p>
<p><u><신 설></u></p>	<p>2. <u>1,5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인 경우: 150억원 이내</u></p>
<p><u><신 설></u></p>	<p>3. <u>2,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인 경우: 200억원 이내</u></p>
<p><u><신 설></u></p>	<p>4. <u>3,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인 경우: 300억원 이내</u></p>
<p><u><신 설></u></p>	<p>② <u>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물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u></p> <p>1. <u>투자사업장 이외의 관내 지역에 건물 신축 및 매입</u></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략) <신설></p>	<p>2. 세대수는 25세대 이상(다만, 같은 사업자가 2개 이상 건물을 신축 및 매입한 경우 합산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28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자문가(이하 “자문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컨설팅기업, 공공기관(산업단지공단 등), 금융기업 등에서 근무하여 투자자문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2. 민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p> <p>3. 그 밖에 기업 투자 및 공장설립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투자기업 자문</p>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재정수반요인 :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지급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제14조(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해당	없음		
	세출						
	시비	2,860	4,120	4,120	4,120	4,120	19,340
총비용		2,860	4,120	4,120	4,120	4,120	19,340

3. 재원 조달 방안 : 시비 100%

1.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3,250	7,000	7,000	7,000	7,000	31,250
지방채							
기금							
기타 (채무부담, 민자, 군비 등)							
합계		3,250	7,000	7,000	7,000	7,000	31,250

※ 세외수입(매각사업수입):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충당
2. 협의사항 : 예산담당 협의
3.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860	4,120	4,120	4,120	4,120	19,340
투자기업 보조금		2,860	4,120	4,120	4,120	4,120	19,34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50	7,000	7,000	7,000	7,000	31,250
	세외수입	3,250	7,000	7,000	7,000	7,000	31,25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7 호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 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

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후관리) 시장은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용자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 지원일로부터 용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보조 또는 용자를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경우</u> <u>2. 용자지원을 받은 후 용자금 상환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u> <u>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u> <u>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p><u>②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정산, 반환,</u></p>

<신 설>

제17조 · 제18조 (생 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사후관리) 시장은 귀농 ·
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용자 지원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 지원일로 부터 용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 제20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8 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처리시설”을 “산지유통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예허브업무”를 “통합마케팅업무”로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공유통담당”을 “통합마케팅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9월에”를 “1회”로 한다.

제13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u>남원시</u>,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p> <p>2. “농산물 <u>종합처리시설</u>”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p> <p>3. ~ 6.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농정국장과 <u>원예허브업무 담당과장</u> 및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u>각 호</u>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 ----- -----.</p> <p>2. ----- <u>산지유통시설</u>----- ----- ----- -----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통합마케팅업무</u> ----- ----- ----- ----- -----<u>각 호의 사람</u> 중에서 <u>시장이</u> 위촉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5.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u>가공유통담당을</u>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제7조(회의) ① (생 략)</p> <p>② 정기회는 매년 <u>9월에</u>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 (생 략)</p> <p>제13조(종합계획)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u>3년</u>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통합마케팅업무팀</u> <u>장</u>-----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회</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종합계획) ----- ----- ----- <u>5년</u> ----- -----.</p>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39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이용 및 해약)”을“(예약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 및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설물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스템 오류,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제18조의3(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예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이용예정일 전전날까지 한 해약은 예약금 전액을, 전날 한 해약은 예약금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p> <p>③ 장애인을 증명하여 시설 예약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날 한 해약에 대하여 예약금의 60퍼센트를 환불한다.</p> <p><신 설></p>	<p>제18조(예약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휴양림 관리·운영자 및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p> <p>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p> <p>제18조의2(시설물 이용제한 등)</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스템 오류,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시 위협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휴양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u></p> <p><u>제18조의3(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u></p>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0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이용료의 환불)”을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료의 환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3.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5.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환불 <p>② (생략)</p>	<p>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1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의 예약 및 반환)”을 “(예약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이용의 예약 및 반환) ① ~ ③ (생략)</p> <p>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3.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50퍼센트 환불 5.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환불 <p>⑤ (생략)</p>	<p>제11조(예약 및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2 호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

로 선정된 토지

2.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녹화계약체결)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녹화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의 유무,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다.

제6조(녹화계약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녹화계약 변경 또는 해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8조(계약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공원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운동회, 집회, 행사 등 특수한 목적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공원시설의 사용
2. 물품판매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사용
3. 일시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용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용

제14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 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제15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는 가능하다.

나.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마.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바.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사. 산업단지 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2.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할 것.

제16조(점용 및 사용 허가 기간)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 허가를 받은 사

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등) ①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9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원상회복) ①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는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관·이용 또는 조성 등을 감안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시장이 승인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도시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②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19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공공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대상의 모든 시설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도로·교량·철도 및 노외주차장·선착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위와 같음
3. 점용허가대상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위와 같음
4.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토석의 채취는 점용면적에(채취허가량 × m ²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25를 부과한다.
6. 점용허가의 대상중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중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기타 점용허가의 대상중 상기 각 호 이외에 해당하는 시설의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3 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

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 가림판(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

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

·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 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개방화장실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법 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손건조기 (종이수건)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안심 가림판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화장실	건 물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개방화장실 현 황	시설	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			지정 층	층				
	관리자									
개방시간										
<p>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별지 제4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

신청인	성명		☎ (사무실)
	주소	(휴대폰)	
	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		
취소대상	건물명		
	주소		
화장실	연락처 (☎)	사무실 :	
		휴대폰 :	
취소 내용	지정일		
	취소사유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3. 25.>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주 소													
시 설 현 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손 건조기 (종이수건)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손 건조기 (종이수건)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4 호

남원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원시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남원시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차령만료일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중에서,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통지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남원시 택시운송사업자</u> -----.</p> <p>제5조의2(자동차의 차령 등)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남원시 <u>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u>은 별표 1과 같다.</p>

[별표 1]

사업용 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제5조의2 관련)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경형·소형)	5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	8년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5 호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 수도시설의 범위”란 수원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시설 등을 말한다.
 10. “단위사업비”란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세제공미터 당 사업비를 말한다.
 11. “시설용량”이란 시의 정수장 시설용량의 합을 말한다.

12.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에 1명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 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옥탕용 등을 말한다)의 경우 시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13. “순자산”이란 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text{순자산} = (\text{가동설비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 - \text{기부금 누계액}) - \{ \text{시설분담금} \text{ 및 } \text{공사부담금 누계} \times (1 - \text{감가상각 누계액} / \text{가동설비 자산 취득가액}) \}$$

14. “추가사업비”란 제2조제1호가목의 원인행위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지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원인자(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고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타 시설물 또는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그 원인자에게 파손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

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부담금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다)

2. 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에 따른 손괴예방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의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결빙방지 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의 배상금
9. 그 밖에 홍보비 등

제6조(부담금 감면)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수도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이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인자는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시는 원인제공자와 별표 2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
3. 원인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추가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
4.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
5.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 제1항제5호를 준용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한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되, 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음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
5. 출장경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6. 지원경비: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에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

7. 홍보비: 시민에게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단수시간 등을 홍보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

③ 작업시간은 출장 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 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파손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 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 간 합의한 비율이나 동일한 비율로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는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제14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시장은 긴급 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 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이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6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4조, 제14조의2, 제48조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③ 세대별로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남원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를 "사용료의"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6의 과태료 란 중 "사용요금 또는 시설부담금의"를 "사용요금의"로 한다.

[별표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단위사업비}(\text{총사업비}/\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부과대상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라.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마.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규모사업 등

2. “단위사업비”란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해당 수도시설사업의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도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도물 1세제곱미터 당 사업비
- 나. 해당사업 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는 경우 또는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단순히 물 수요를 야기하면 최근 건설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된 단위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하되, 공사 착공 전 등으로 공사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설계예산서 및 추정소요액으로 정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명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가. 1명 1일 최대급수량 = 1명 1일급수량 × 침투계수
- 나.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
다. 계획 1명 1일급수량 및 침투 계수는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4. “추가사업비”란 해당사업구역 및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부대비를 포함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5.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또한, 협약 당시까지 전년도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은 누적하여 계상할 수 있다.

[별표 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_____에서 시행하는_____사업의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 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 그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_____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원인자부담금 : _____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및 부대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① “을” 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② _____사업은 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 이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 은 “을” 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을” 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갑” 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제곱미터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 및 부대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을” 이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은 ○○○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갑” 은 “을” 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을” 과 협의한다.

② “을” 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갑” 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구 분	납부금액	납부액비율	청 구 시 기	납 부 기 한
합 계		100퍼센트		
1차(최초)		50~80퍼센트	착공신고일 이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2차(정산)		50~20퍼센트	준공예정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의 완공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③ 체납액과 지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 제출 및 통지) ① “갑”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각호의 사항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 원인자부담금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
- 2. 사업 착공 및 사업 준공(변경) 예정일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시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남 원 시 장

(을)

[별표 3]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제7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 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은 전연도 남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별표 4]

원인자부담금표(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원)	비고
13mm	96,000	개조 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mm	192,000	
25mm	320,000	
32mm	576,000	
40mm	880,000	
50mm	1,552,000	
75mm	3,104,000	
100mm	5,280,000	
150mm	11,616,000	
200mm	19,008,000	
250mm	75,680,000	
300mm	123,200,000	

[별표 5]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³/sec)Q2 = 시간당 손실수량 (m³/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²) = 10,000a(cm²)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²)(수두 10m는 수압1kg/cm²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면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³)A = 면적(m²)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6 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 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 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 건법」 제34조제3항----- -----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 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 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괴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7 호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흡연”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오고가”를 “오고 가”로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제5조제2항 후단 중 “같다.[조문 제목 변경 2020.5.22.]”를 “같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만 45세”를 “45세”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생략)

③ (생략)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만 45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1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20.5.2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제12조로 조문이
동]

----- 아니
된다.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45세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8 호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3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제2항제6호 중 “치매환자”를 “치매환자 및 그”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검사, 예방사업, 검진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와 법인·기관·단체 등

제5조(중전의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호 중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물품”을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제9조(중전의 제6조) 중 “사람”을 “사람,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p> <p>7.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치매환자 및 그 -----</p> <p>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p>	<p>제5조(지원 대상) -----</p>

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신 설>

2. (생략)

3.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및 자원봉사자와 단체

4. (생략)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생략)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생략)

5.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

-----.

<삭 제>

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검사, 예방사업, 검진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와 법인·기관·단체 등

1.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지원 내용) -----

-----.

1.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 검사-----

2. (현행과 같음)

3. ----- 비용

4. (현행과 같음)

5.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

예방을 위한 물품

6. ~ 10. (생략)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관리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생략)

<신설>

제8조 (생략)

제9조 ~ 제11조 (생략)

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6. ~ 10. (현행과 같음)

제9조(환수조치) -----
----- 사람, 법인·기관·단체 등-----.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붙임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49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회”를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로 한다.

1. 인플루엔자
 - 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u>로타바이러스 : 2회 또는 3회</u></p> <p>2. <u>대상포진 : 1회</u></p> <p><u><신 설></u></p> <p>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납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p>1. <u>로타바이러스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u></p>	<p>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 ----- ----- -----.</p> <p>1. <u>인플루엔자: 연 1회</u></p> <p>2. ----- <u>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u></p> <p>3. <u>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u></p> <p>제3조(지원대상) ----- ----- ----- -----.</p> <p>1. <u>인플루엔자</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u></p>

현 행	개 정 안
<p>2. 대상포진 : 60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단, <u>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u>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른 국가유공자</u></p> <p>마. 「<u>다문화가족지원법</u>」에 <u>따른 다문화가족</u></p> <p>바.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u>따른 한부모가족</u></p> <p>2. ----- ----- ----- -- <u>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u> ----- -----</p>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50 호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

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 “응급의료 전문의”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중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응급의료 종사자”란 법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4.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 인건비
5.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실 운영비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관내 초·중·고등학생,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자부담 비율, 응급의료 전문의 및 응급의료 종사자 근무 인원 등 응급의료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운영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시장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51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식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는 효율적인 가공식품”을 “시는 효율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공동상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를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

상표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남원시의회의원”을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유통관련단체”를 “유통 관련단체”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언”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밖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을 “밖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3항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8조 중 “여비나”를 “여비 및”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여행”을 “장기 여행”으로 한다.

제10조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 담당”을 “공동상표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가공식품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를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을 정하고”로, “7일내”를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품목”을 “사용상품”으로, “규칙 등”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공동상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등”을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상표 사용심사 및 승인)”을 “(사용심사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상표 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부적합 한”을 “부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표사용 심사결과”를 “심의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으로, “상표”를 “공동상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가공식품”을 “따른 사용권자는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을 “사용권자는 대상 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자”를 “사용권자”로, “대상품목”을 “대상 품목”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하게”를 “하도록”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권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표법」 제10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상표사용자가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거쳐”를 “거쳐 사용권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을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 제조, 판매 등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공동상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해 상표사용”을 “따라 사용승인”으로, “처분기간동안”을 “처분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는 가공식품”을 “시장은”으로,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전시판매”를 “전시 판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① “가공식품”이란 남원시 관내(이하 “시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p> <p>②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란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p> <p>③ “사용권”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p> <p>④ “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p> <p>⑤ “사용상품”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p> <p>⑥ “관리권”이란 가공식품 공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공식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p> <p>2.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p>

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효율적인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탁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시는 효율적인

-----.

② ----- 공동상표 -----

-----.

제2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

-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는 가
공식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권, 사용자, 사용
상품 및 관리권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
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
촌활력과장, 원예산업과장, 축
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
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
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

흥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신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제안
- 3. 그 밖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② (생략)

③ 회의와 관련된 시간·장소·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내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④ (생략)

----- 남원시의회 의원-----

----- 유통 관련단체 -----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

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1. (현행과 같음)
- 2. -----
----- 사항
- 3. -- 밖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하여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5일 전-----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3. (생략)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공동상
 표 담당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
 리한다.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가공식품 사용상품(이하 “사용
 상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내에 정한 사용

제8조(위원회의 수당) -----

 ----- 여비 및 -----
 -----.

제9조(위원의 해촉) -----

 ----- 해촉-----.

1. (현행과 같음)
2. -----
 ----- 장기 여행-----

3.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
 ----- 공동상표 업무 팀장-----

 -----.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위원
 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이하 “사용
 상품”이라 한다)을 정하고-----

 ----- 7일 이내-----

상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신청) ①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3조(상표 사용심사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상품-----
---- 규칙-----.

제12조(사용신청) ① 공동상표-----

-----.

② -----

----- 규칙-----
-----.

제13조(사용심사 및 승인) ① 시장은

----- 위원회 ----- 공동
상표 사용을 승인-----
-----.

위원회 ----- 부적합
한 -----

-----.

② 심의 결과-----

-----.

③ ----- 자(이하 “사용권
자”라 한다)는 -- 공동상표-----
-----.

제14조(사용기간)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

제14조(사용기간) ① -----
따른 사용권자는 3년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30일 전 -----
-----.

제15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권자는
대상 품목-----

-----.

② 사용권자-----
----- 대상 품
목-----

----- 하여야 -----.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권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 5. (생략)
6. 그 밖에 위원회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지 않은 자가 「상표법」 제10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같은 법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 하도록 -----.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

- 거쳐 사용권자에 대하여 -----.

1. (현행과 같음)
2. -----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 제조, 판매 등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

3. ~ 5. (현행과 같음)
6. ----- 공동상표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7조에 의해 상표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 따라 사용승인 -----

-- 처분 기간 동안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

----- 수 -----

-----.

② 시장은 ----- 전시 판매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52 호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그 밖의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담당직원 배치) 의장은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

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53 호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p> <p>① (생 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자치행정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 략)</p> <p><u><신 설></u></p> <p>3. 경제산업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u></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54 호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같은 항 중 “농업정책위원회의”를 “경제산업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7.12.>

남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 례 대 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생략)</p> <p>② 의원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p> <p>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u>농업정책위원회의</u>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 <u>경제산업위원회의</u>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55 호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직위와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4인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위원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업무는 소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①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 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기간 중이라도 시장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의 인사청문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 및 위원회 회부하여,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

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

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56 호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표서식”을 “별표 1”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을 “영 제4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및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로 한다.

제22조 중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를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증인선서) ① 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u>별표서식</u>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6조(증인선서) ① ----- ----- ----- ----- <u>별표 1</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증인의 실비보상)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u>공무원여비규정</u>」 <u>별표 2</u>에 제2호를 준용한다.</p> <p>3. ~ 5. (생략)</p>	<p>제18조(증인의 실비보상)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공무원 여비 규정</u>」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20조(과태료)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하여 <u>같은 법 시행령</u></p>	<p>제20조(과태료) ① ----- ----- ----- <u>영 제46조제5항</u>-----</p>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및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따른다.

제22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

--.

제22조(준용규정) -----

----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957 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원칙 적용 및 담당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문구 정비 등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 개정

연 번	조 례 명	관 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1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 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중	의정담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2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 중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인용제명 수정
		제12조제4항 중	의정담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3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 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의정담 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4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 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의정담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연 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5	남 원 시 의 회 공 무 원 복 무 조 례	제 13 조 제 4 항 제 2 호 중	의 정 담 당	의 정 팀 장	명 칭 변 경 반 영
		제 13 조 제 10 항 중	만 4 세 이 하	5 세 이 하	상 위 법 개 정 반 영
6	남 원 시 의 회 공 무 원 등 후 생 복 지 에 관 한 조 례	제 9 조 제 2 항 중	의 정 담 당	의 정 팀 장	명 칭 변 경 반 영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 453 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규정 중 대외직명제 명칭 변경에 따라 미정비된 사항을 일괄로 정비하고,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남원시 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명칭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가유산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남원시 규정 중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담당 명칭 변경) 남원시 규정 중 담당 명칭 등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24. 1. 18.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규정은 2024. 5.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정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사항		비고
			현행안	개정안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명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1조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2조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시장·군수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	
2	남원시 재정현안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	남원시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	제5조제4항제1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4	남원시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5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3조제3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4조제4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6	남원시 방첩업무 규정	제6조제2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별표 2]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사항(문화재→국가유산)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현행안	개정안	
1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	제1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	
		제2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	

[별표 3]

담당 명칭 변경을 위한 남원시 규정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현행안	개정안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 수 협의회 규약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이 된다	업무팀장이 된다	
2	남원시 행정혁신 운영규정	제6조제5항	성과통계담당	성과관리 담당	
		제7조제1항	주무담당	주무팀장	
		제8조제1항 및 제9 조제3항	성과통계담당	성과관리 팀장	
3	남원시 재정현안조정위원 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예산담당	예산 팀장	
4	남원시 예산성과금 운영 규 정	제8조제1항	예산업무 담당	예산 팀장	
5	남원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제2항	담당주사는	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담당주사	팀장	
6	남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감사담당	감사 팀장	
7	남원시 자체감사결과 심의 회의 규정	제3조	감사담당주사가	감사 팀장이	
8	남원시 청문사무처리 규정	제5조	법제업무담당	법제업무 팀장	
			담당급 이상	팀장급 이상	
9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제6항	청원업무담당	청원업무 팀장	
10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7조제2항	법무업무담당	법무업무 팀장	
11	남원시 소송사무처리 규정	제5조제3항	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을	
12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8조	대외협력 담당	공무국외여행 업무 팀장	
13	남원시 방첩업무 규정	제5조제1항	대외협력업무 담당	대외협력 업무 팀장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사항		비고
			현행안	개정안	
14	남원시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	제26조제3항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2항	인사담당 담당 담당	인사 팀장 팀장 팀장	
15	남원시 개방형직위 선발시 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제2항	인사업무 담당	인사 업무 팀장	
16	남원시 발간실 운영 규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7조2항	업무담당주사	업무 팀장	
17	남원시 기록물 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제1항	담당주사	담당 팀장	
18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2조제1호 나목	업무 담당	업무 팀장	
19	남원시 민원 처리 규정	제6조제1항	담당	팀장	
		제13조제3항	소관업무 담당 관련부서의 담당	소관 업무 팀장 관련부서의 팀장	
		제17조제2항	종합민원담당 관련부서의 담당 처리주무부서의 담당	종합민원 팀장 관련부서의 팀장 처리주무부서의 팀장	
20	남원시 농축산물 생산 조정 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제3항제1호	가공유통담당	가공유통 업무 팀장	
		제3조제3항제2호	축산지원담당주사	축산지원 업무 팀장	
		제4조제4항	가공유통 담당이	가공유통업무 팀장이	
		제5조제2항	담당에서	팀장이	
21	남원시 방화관리 규정	제2조제1항	재산관리 담당주사	재산관리 팀장으로	
		제3조제2항	담당주사가	팀장이	
22	남원시 민방위경보단말운 영 규정	제6조제2항 및 제7조	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 업무 팀장	
23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원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제4항	담당주사	팀장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현행안	개정안	
24	남원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제3항	담당주사	팀장	
25	남원시 현업업무 종사자 안 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안전보건 업무담당	안전보건 업무 팀장	
26	남원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담당	팀장	
27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 정	제10조제1항제1호	담당	팀장	
28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생산	제5조제1항	담당을	팀장을	
	물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담당	팀장	

「남원시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 454 호

남원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본 규정의 내용은 보안유지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공개)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0월 18일

남원시 예규 제 38 호

담당 명칭 변경을 위한 남원시 지침 일괄개정지침안

제1조(「남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의 개정) 남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2조(「남원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의 개정) 남원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의 개정)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통지도담당)”을 “(교통지도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통지도 담당”을 “교통지도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7조2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 팀장”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주무 <u>담당</u></p> <p>② (생략)</p>	<p>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팀장</u></p> <p>② (현행과 같음)</p>

제3조(「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교통지도·단속원”(이하“단속원”)이란 시장의 명을 받아 남원시청교통과(<u>교통지도담당</u>)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4. ~ 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교통지도팀</u>) ----- -----.</p> <p>4. ~ 7. (현행과 같음)</p>

제14조(운영인력 및 임무) ① (생략)

② 운영책임자는 교통지도 담당이 되며, 시스템 운영을 관리한다.

③·④ (생략)

제14조(운영인력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통지도업무
팀장-----
--.

③·④ (현행과 같음)